

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. 3. 8 선고 2017가단106686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1. B

2. C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8. 3. 8.

주 문

1.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,
가. 포항시 북구 D 대 697m² 및 E 잡종지 115m² 지상의 건설자재 및 컨테이너를 취거하고, 위 토지를 인도하며,
나. 2017. 3. 22.부터 전항의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월 1,2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2. 적용법조 :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김동휘

별지